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2014년 8월 26일(화) 조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산업기술개발과 천영길 과장(044-203-4520), 박만희 사무관(4521)

산업부,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「R&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」 시행

- ① 실시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(RCMS) 전면 적용
- ② 공익신고자 보상금 최대 10억원으로 인상
- ③ R&D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연내 부과
- ④ R&D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 강화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연구개발(R&D)자금 부정사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「**산업 R&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**」을 마련 추진한다.

* 지난 '14. 8. 6, 부패척결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국가 보조금·지원금 비리를 '3대 우선척결비리'로 선정하고,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키로 함.

□ '산업 R&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'은 크게 4가지로 ① R&D 전담기관을 통한 **과제관리 강화,** ② **공익신고 활성화**, ③ **제재조치 강화**, ④ **내부통제체제 강화** 방안으로 구성했다.

① **과제관리를 강화**하기 위하여 **'14년 하반기까지 산업 R&D 과제에 대해 RCMS*를 전면 적용**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.

* RCMS(Real-time Cash Management System) : 은행, 카드사 및 국세청과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급·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 증빙관리 및 온라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Paperless 시스템

<산업부 R&D 자금흐름 프로세스>



- RCMS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9가지 **비정상집행*을 특별관리**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,

* 특정 거래처 집중사용, 집행시기 집중, 집행취소 빈번 등

- 과제수행기관에 대한 **인건비 지급방식 개선** 및 **모든 구매장비 내역을 e-Tube**(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플랫폼)에 **연계**하여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등의 부정사용을 막는다.

- 페이퍼컴퍼니 등 거래처의 건전성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(재무제표 확인원,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 등) 제출의무화, 시제품 제작비 및 재료비 사업계획 반영, 정산회계법인의 기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.

* 시제품제작비 지출 상위 50개사 대상 정밀실사 및 개선방안 도출 ('14.10월)

② 부정사용에 대한 **공익신고를 활성화**하기 위하여 현행 최대 1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신분보장도 강화한다.

③ R&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**제재부가금*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.** (2014. 8. 6.)

- '12년 이후 발생한 자금부정사용 20여건에 대하여 9월중에 1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.

* 연구비 부정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용금액의 최대 100% 과징금 부과

④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**내부통제체제를 강화**하기 위해

○ 전담기관의 직원 비위 발생시 **지휘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**하고, 과제협약시 **과제 수행기관 내부에서 사업비 통제·관리방안을 제출하도록** 했다.

○ 전담기관에 **암행감찰관** 제도를 신설하여 전담기관 직원, 부처 공무원, 수행기관 등 부정비리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.

□ **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**은 "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고, **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**로 삼겠다." 라고 말했다.

*** 붙임 : 「산업 R&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」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박만희 사무관(☎ 044-203-45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〈 붙임 〉

산업 R&D자금 부정사용 방지 대책

2014. 8.

산업통상자원부

차 례

Ⅰ. 검토배경 ····· 1

Ⅱ. R&D 자금흐름 현황 및 사각지대 ····· 2

Ⅲ. R&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대책 ····· 4

1.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대폭 강화 ····· 4

2. 공익신고 활성화 ····· 5

3. 제재조치 강화 ····· 5

4. 내부통제체제 강화 ····· 6

Ⅳ. 추진일정 ····· 7

<참고1> R&D 부정사용행위 발생 현황 ····· 8

<참고2> RCMS 연구비 집행분석 관리 패턴 9가지 유형 ····· 9

Ⅰ. 검토배경

□ **산업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총액의 18%이상, 매년 3조 2천억원 규모의 R&D를 수행**

* 산업부 R&D 예산구성 : ('14년 기준)일반회계 1조6천억 , 광특회계 7천억, 에특회계 3천억, 전력기금 5천억원 규모

□ R&D 수행과정에서의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R&D 전주기에 걸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,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는 **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**

*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는 최근 4년간 265건, 528억원이 발생

* 거짓 증빙서류 제출, 허위 장비 구입, 인건비 부정사용 등

□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서

○ **언론**에서 부정사용행위 및 솜방망이 처벌사례 등이 꾸준히 사회이슈화

* '14.8, "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기관 직원이 특정업체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 수수"
'14.2, 한겨레, "연구비 받아 딴 데 쓰고, 딱 걸린 임원들 승진까지"

○ **국회**차원에서도 연구비 유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을 촉구

* **'13 국정감사**, 박완주의원, 정부의 R&D 연구비 유용 및 횡령 여전
'13 결산지적, 예산의 유용·횡령 등의 적발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정산을 확대하고, 현장점검을 통한 연구비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 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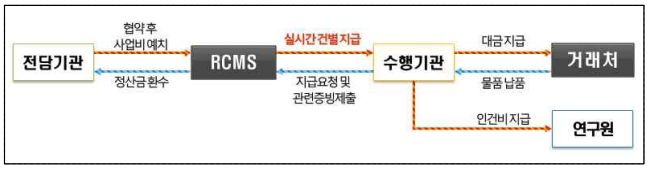
○ **정부**에서는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중 국가 보조금·지원금 비리를 '3대 우선척결비리'로 선정 (8.6, 부패척결 관계 장관회의)

- VIP께서도 부패척결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 (7.22, 국무회의)

Ⅱ. R&D 자금흐름 현황 및 사각지대

1 R&D 자금흐름 프로세스

○ 우리부는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해 '10년 RCMS*를 도입하여 전자증빙에 기반한 실시간 연구비 집행관리를 시행 중('13년말 기준 91.5%)



* (RCMS) 국세청과 연계된 실시간 연구비 지급·관리 시스템

○ RCMS 도입 및 고도화에 따라 사업비의 일시 유용, 중복 증빙 등의 사례는 차단할 수 있으나,

- **수행기관이 거래처와 모의**하여 거짓으로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 현장점검 없이는 밝혀낼 수 없는 **사각지대도 존재**

2 R&D 자금 부정사용 사각지대 사례

○ **(페이퍼컴퍼니 설립)** 최근 발생하는 연구비 유용의 대표적 사례로 페이퍼컴퍼니 설립하여 정상적인 회계증빙, 세금신고, 대금지급 후 일부 자금을 되돌려 받는 행위

- 통상적으로 공모에 의한 유용이므로 수행기관과 거래처가 특수관계자(가족, 친족 등)이거나 주주관계가 겹치는 경우가 다수

* (사례) "u-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"으로 선정된 기업의 연구비 용도외 사용과 NIPA 직원 뇌물 제공('14.8)

○ **(재료 과다 구매)** 연구개발 용도 외 양산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과다 구입

* (사례) R사는 은(Ag) 등 재료를 연구개발 외 양산용으로 구입

○ **(허위 장비 구입)** 신규장비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기존 보유장비를 신규장비로 허위 보고

* (사례) N사는 '08년 5월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버를 U사로부터 '11년 9월 구입한 것으로 허위 보고

○ **(인건비 부정사용)** 인건비를 연구비 통장으로부터 운영자금 계좌로 송금하여 타 용도로 사용

* (사례) M사는 인건비를 사무실 임차료, 이자비용 등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

3 원인분석

① **(과제관리 미흡)** 현재 R&D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**회계 불부합 위주의 단순점검 수준**으로 사업비 부정사용 적발에 한계

○ 부정사용사례에 대한 데이터 분석체계를 강화하고, **현장점검 및 검증**을 병행할 필요

○ 또한, 부정사용 행위 발생 시 전담기관 직원 및 관리자에 대한 책임부여 등 **내부통제체제 미약**

② **(공익신고 부족)** 부정사용 수법이 갈수록 정교화·지능화됨에 따라 과제 정산과정에서 **부정사용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**

○ 현재 각 전담기관에서 운용중인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포상금 수준*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기준 강화가 필요

* (산업부 전담기관) 최대 1,000만원, (권익위) 최대 10억원

③ **(제재조치 미흡)** 사업비 부정사용 적발 시 국가R&D 사업 참여제한* 및 출연금 환수 조치하고 있으나, **여전히 경각심 부족**

* 참여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모든 정부 R&D 사업에 최대 5년간 참여 불가

Ⅲ. R&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대책

1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대폭 강화

① **(RCMS 전면 적용)** '14년부터 산업 R&D과제 전체에 대해 RCMS를 전면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

- RCMS "집행패턴 분석"으로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9개 **비정상적 유형* 선별**하여 특별관리 및 현장점검 강화 지속추진

 * 특정 거래처 집중사용, 집행시기 집중, 집행취소 빈번 등

- RCMS의 과제수행기관 **연구원 인건비 지급방식 개선** 및 모든 구매 장비의 e-Tube 연계('15년)

 * 現) 수행기관이 인건비 수령 후 참여연구원 개인별 배분 → 改) RCMS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직접 지급 (세금원천징수 등 시스템 개선 필요)

 * 現) 3천만원 이상 장비만 등록 → 改) 모든 구매장비를 등록·관리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구매와 현물계상 방지

② **(기업 신용평가기관과 연계)** 신평사의 기업 정보(경영잔재무·신용 등)를 RCMS와 연계하여 **수행기관-거래처간 거래의심과제*** 조기 탐지('14.10월)

 * 설립·폐업시기(과제수행기간 비교), 매출액(매출의존도), 등기임원(연구원 관계) 등의 정보 분석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의심 거래처를 추출

- 신용평가기관의 조기경보(Early Warning)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행기관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 유용 시도에 대해서도 선제 조치

③ **(정산 회계법인 기능 강화)** 전문회계법인 정산시 증빙상 문제는 없으나 부정사용 의혹이 감지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통보 및 현장점검 실시

- 회계법인의 자금 오·유용 적발실적을 매년 평가결과에 반영하여 차년도 물량배정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고, '16년까지 전담기관별로 5개 이내로 축소

④ **(시제품 제작 등 관리 강화)** 수행기관의 시제품제작비, 재료비 집행시 일정규모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사전반영하고 증빙서류(재무제표 확인원,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 등)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거래처의 건전성 확인 강화

- 시제품제작비 지출 **상위 50개사 대상 정밀실사** 및 개선방안 도출 ('14.10월)

⑤ **(스마트평가 시스템 구축)** 연구수행자와 평가위원이 원거리에서 화상회의 및 전자평가가 가능토록 하여 과제선정 및 평가의 투명성 강화('15년)

- 평가위원회 회의과정 전 과정을 녹취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 확보 ('14.하)

2 공익신고 활성화

① **(공익신고 제고방안 마련)** 3개 R&D 전담기관의 「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 지침」 개정 추진 ('14.9월)

-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수준 및 신분보장 등을 국민권익위 수준으로 대폭 상향

 * 보상금 : (現) 최대 1억원 → (改) 최대 10억 / 포상금 : (現) 최대 1천→ (改) 최대 2억원

3 제재조치 강화

① **(제재부가금 징수 의무화)** 사업비 부정사용 경각심 제고 및 사전예방을 위해 자금 유용·횡령시 **제재부가금* 부과·징수**를 의무화

 * 연구비 부정 사용 기관/직원에 대해 해당 금액의 100%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

- 2012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**연구비 부정사용 30여건**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 ('14.9월,12월)

② **(국세청 연계)** 부정사용에 연루된 수행기관 및 거래처 정보를 국세청의 **탈세 조기경보 시스템** 기초자료로 활용*토록 국세청에 제공('14.9월)

 * '08~'12년 기간동안 세금계산서 허위·거짓 발급업체 등 총 67건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총 12건, 17억 원의 세금 추징

- RCMS가 국세청과 연계되어 **세무조사 가능성을 경고**함으로써 수행기관의 연구비 부정사용 억제효과 기대

4 내부통제체제 강화

① **(전담기관)** R&D 부정사용 및 비위행위 발생 시 **전담기관 직원 및 관리자**에 대한 책임을 강화

- 부정사용이 발생한 R&D 과제에 대해 담당 직원의 업무소홀 등 귀책사유 발생 시 **인사 및 성과평가**에서 불이익 조치 신설 ('14.10월)

- 직원 비위행위 발생시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직제상위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자 책임 강화 ('14.10월)

- 전담기관 감사 주관 **암행감찰관 제도**를 신설하여 소관부처-전담기관-수행기관이 연루되는 비위행위를 상시 감시 ('14.10월)

* 암행감찰관 상위 기관 직접보고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자격, 위촉, 권한, 활동, 경비 등에 대해 감사규정에 반영

② **(수행기관)** 과제 협약시 수행기관 자체의 사업비 통제·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여 수행기관 내부 통제를 강화 (즉시)

- 수행기관 스스로의 사업비 사용 감독을 통해 부정사용행위 예방

③ **(정부통제 강화)** 산업부 차원에서 R&D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정행위 발생가능성을 사전차단 ('15년)

- 또한, 전담기관의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건수*를 경영평가 지표로 반영하여 부정행위 적발 노력을 유인 ('15년)

* 연구비부정사용 외부적발건수(점수하향) + 내부적발건수(점수상향)

** 직원 비위행위 발생여부 및 기관의 개선노력은 기관경영평가(비계량지표) 및 청렴도 평가에 기 반영

Ⅳ. 추진 일정

중점과제	세부조치	추진일정
과제관리 강화	○RCMS 전면적용 및 집행패턴 분석 강화	'14년~
	○RCMS 인건비 지급방식 개선 및 e-TUBE 연계	'15년
	○기업 신용평가기관 연계	'14. 10월
	○정산 회계법인 기능 강화	'14. 7월
	○시제품 제작등 관리 강화	'14. 10월
	○스마트평가시스템 구축 및 녹취확대	'15년 (녹취확대 '14.하)
공익신고 활성화	○공익신고 보호보상지침 개정	'14. 9월
제재조치 강화	○제재부가금 부과	'14. 9월 / 12월
	○부정사용 연루 수행기관 정보 국세청 연계	'14. 9월
내부통제 체제강화	○과제담당직원 인사 및 성과급 불이익 조치	'14. 10월
	○비위직원 지휘감독자 책임 강화	'14. 10월
	○전담기관 감사실 암행감찰관제 신설	'14. 10월
	○수행기관의 사업비 통제·관리방안 마련 의무화	즉시 (신규과제 협약체결부터 적용)
	○전담기관 및 수행기관 특정 감사	'15년
	○연구비 부정사용 적발노력 경영평가 반영	'15년

참고1 R&D 부정사용행위 발생 현황

□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는 최근 **4년간 265건, 528억원**이 발생

○ '10년도 이후 다소 감소세이나, 일정수준(매년 평균 60여건, 130억원 정도) 지속적으로 발생

<연도별 부정사용 발생추이>

연도별	'10	'11	'12	'13	합계
부정사용건수	99	53	48	65	265
부정사용액(억원)	233	89	86	120	528

○ 유형별로 보면 △납품기업과 공모하여 허위로 물품공급 또는 대금 부풀리기, △연구개발비 목적외 사용, △무단인출 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정사용

<부정사용 유형별>

유형별	납품기업과 공모	목적외사용	무단인출	허위증빙 등	합계
건수	100	80	58	27	265
금액(억원)	163	133	181	51	528
건수비중	38%	30%	22%	10%	100%

○ 사업비 부정사용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에서 발생

<부정사용 수행주체별>

수행주체별	대기업	중소기업	연구소	대학·기타	합계
건수	7	166	58	34	265
금액(억원)	44	433	21	30	528
건수비중	3%	63%	22%	12%	100%

참고2 RCMS 연구비 집행분석 관리 패턴 9가지 유형

집행패턴 분석 유형별 검토 내용
① 1회 사용금액 1억원이상
・고액(1억원) 사업비 집행 내역의 적정여부 ・A社는 1억원 이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이 없음에도 부적절한 고가 집행
② 과제별 동일거래처 거래 10회 이상
・특정 거래처 집중 여부 ・B社는 리베이트 회수를 목적으로 실물 거래없이 특정거래처에 사업비 집중 집행
③ 10개이상 다른 과제 기관에서 1개의 거래처로부터 납품
・특정 거래처 집중 여부 ・C 거래처는 추후 리베이트 제공을 조건으로 다수의 과제수행기관에 고가 집행 유도
④ 정부출연금 입금 후 3개월 70%이상 집행
・개발기간 초기에 과다 집행의 적정여부 ・D社는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비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
⑤ 과제 종료 전 2개월 이내까지 전체 사업비의 30%미만 집행
・밀어내기 식 사업비 집행 위험 및 해당 과제의 사업비 적정 여부 판단 ・E社는 기술개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집행이 미비
⑥ 월 사용금액이 50%이상 집행
・개발기간 특정 월에 과다 집행 적정 여부 ・F社는 갑작스런 경영 악화로 사업비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부정사용
⑦ 연구비 집행취소가 기관당 10회 이상
・부적절한 사업비 집행 여부 ・G社는 사업비를 다른목적으로 일시 전용한 후 다시 되돌리는 방식으로 부정사용
⑧ 기타증빙비율 70%이상
・전자세금계산서, 카드결제 외 증빙 부적절 사용 ・H社는 사업비를 편취 목적으로 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기타 증빙 사용
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3개월 이상 지연
・RCMS 적용과제는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・I社는 사업비를 별도 용도로 사용한 후 증빙서류 부족으로 제출 지연